

## 여성노인의 인권: 나이듦과 젠더의 교차

Human rights of older women: the intersection between ageing and gender

(July 16, 2021)

클라우디아 말러,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

(Claudia Mahler,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

###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II. 나이듦과 젠더의 교차(Intersection between ageing and gender)

III. 여성 노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older women)

A. 교육과 평생 학습(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 소득보장, 사회적 보호 및 재산권(Income security, social protection and property rights)

C. 건강권(Right to health)

D. 자주성과 독립성(Autonomy and independence)

E. 장기 요양과 지원(Long-term care and support)

F. 폭력, 학대 및 방치(Violence, abuse and neglect)

G. 갈등 및 긴급 상황(Conflict and emergency contexts)

IV. 여성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older women)

A.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Legal and policy frameworks)

B. 여성 노인의 참여, 기여 및 자기 통제(Participation, contribution and agency of older women)

V. 결론 및 권고 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E. 장기 요양과 지원(Long-term care and support)

44. 여성이 오래 사는 경향이 있고, 신체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여성의 33퍼센트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남성의 19퍼센트와 비교된다.<sup>50</sup>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장기 요양이 국가정책과 법률에서 무시되고 있다.<sup>51</sup> 2020년 당시 49퍼센트의 국가가 장기 요양에 대한 국가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세계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sup>52</sup>

45. 이는 여성들이 노인을 위한 주요 돌봄 제공자이면서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중으로 영향을 미친다. 소득과 자산 면에서 이미 불이익을 받는 여성 노인은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 요양과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가 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진 일부 조치의 결과로 돌봄 및 지원의 접근성과 그 질이 더욱 약해졌다. 완화 치료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는 여성들이 통증 관리에서 젠더에 관련한 편견을 경험하며, 임종에 대한 선택지를 남성과 같이 갖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한다.<sup>53</sup>

46. 많은 나라에서 가족은 나이 든 구성원의 웰빙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며, 그들에게 가족에 의한 돌봄은 선호되거나 유일한 선택지이다. 하지만

<sup>50</sup> European Commission, *Long-term Care Report: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n Ageing Society* (2021).

<sup>51</sup> Xenia Scheil-Adlung, “Long-term care protection for older persons: a review of coverage deficits in 46 countries”, ILO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series, Working Paper No. 50 (Geneva, 2015).

<sup>52</sup> WHO, *Decade of Healthy Ageing: Baseline Report* (Geneva, 2020), p. 86.

<sup>53</sup> Merryn Gott and others, “Gender and palliative care: a call to arms”, *Palliative Care and Social Practice*, vol. 14 (2020).

가족에만 의존하는 케어 모델(care model)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고, 그들의 삶과 돌봄에 대한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더욱이, 인구 및 이동성에 대한 추세는 가족이 더 적어지고 떨어져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케어 모델은 점점 지속 가능하지 않다.<sup>54</sup> 가족은 또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력과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이니셔티브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일의 양립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다루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와 돌봄 제공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the European Union directive on the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은 같이 사는 사람이나 친척을 지원하는 근로 돌봄 제공자를 위한 유급 휴직, 남성 유급 육아 휴직, 양쪽 부모에게 최소 2개월의 양도가 되지 않는 유급 육아 휴직,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조정의 권리 등을 제공한다.<sup>55</sup>

47. 일부 상황에서 적당하고 저렴한 집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community-based care services)의 부족은 돌봄 시설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돌봄 시설은 여성 노인이 대다수의 거주자이면서, 돌봄, 생활 및 일상에서의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는 곳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과 재정적 자원의 부족으로 여성 장애 노인은 돌봄 시설에서 거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sup>56</sup>

48. 많은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여성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고립, 외로움, 돌봄을 위해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돌봄 시설로

<sup>54</sup> UN-Women,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19–2020, chap. 5.7.

<sup>55</sup> Directive (EU) 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f 20 June 2019.

<sup>56</sup> Submission by Women Enabled International.

가는 것은 그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성 특성을 드러낸다면 정체성을 잃고 낙인찍힐 것이라는 우려에 의한 것이며, 극단적인 차별과 학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노인에게 특히 그러하다. 돌봄 시설의 직원은 대부분 이들 여성 노인의 특정 건강관리 필요에 대해 훈련되지 않았거나 민감하지 않고, 이러한 돌봄 시설 환경은 일반적으로 매우 이성애 중심적이며, 폭력 및 학대 보고 사례 등 성 소수자 노인들에게 심지어 적대적이다.<sup>57</sup>

#### F. 폭력, 학대 및 방치(Violence, abuse and neglect)

49. 경제적 불안, 질 좋고 저렴한 건강 및 돌봄 서비스에의 접근 문제, 제한된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기타 불이익은 여성 노인이 폭력, 학대, 방치의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령과 젠더의 교차가 위험 요소, 가해자의 유형, 폭력, 학대 및 방치의 형태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불충분하게 이해되고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에 대한 일부 이론적 접근은 노인에게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치 요인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권력 불균형보다는 개인 또는 제도적 환경에서 돌봄 제공자가 받는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0. 노인 학대에 대한 법률, 정책, 인식 제고 캠페인은 자주 젠더 관련 관점을 통합하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이 노년기의 여성이 직면하는 특정 위험과 불이익을 고려한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두 경우 모두, 교차 인자를 나열할 때 "젠더"와 "나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대부분이다.

<sup>57</sup> Submissions by Germany, ILGA World and SAGE.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의 특정 경험들은 대부분 가시화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는 노인예의 폭력,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젠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여 차별화된 폭력 및 학대 패턴을 드러낼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에 의해 심화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지역사회 환경에서 학대를 경험했으며, 돌봄 시설 직원의 3분의 2가 학대를 저질렀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러한 사례가 증가했다.<sup>58</sup>

51.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행 및 성폭력과 관련된다. 이에 관련한 대부분의 조사는 15~49세 범위로 제한되며,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50세 이상 여성의 경험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8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및 비파트너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글로벌 추정치에서 대상 데이터의 10퍼센트 미만이 50세 이상 여성을 포함했다. 더욱이,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 사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 국가의 것이 많았다.<sup>59</sup>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 사례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데이터의 한계와 해당 사례의 축소 보고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다.

52. 만년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종종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학대이다. 이러한 학대 관계에서 힘과 통제의 역학은 누적된 불평등이나 연령과 관련되어 생긴 돌봄의 필요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더 큰 위해의 가능성과 폭력과 학대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sup>58</sup> See [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elder-abuse](http://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elder-abuse).

<sup>59</sup> WHO,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Estimates, 2018: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Prevalence Estimate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and Global and Regional Prevalence Estimates for Non-partner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Geneva, 2021) p. 22.

53. 여성 노인에 대한 성폭력은 널리 퍼진 금기와 고정관념 때문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고, 상당히 축소 보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주제에 대한 제한된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며, 일반적으로 친밀한 파트너, 가족 구성원 또는 돌봄 제공자이다. 인지 장애나 물리적 보조가 필요한 노년 여성에게 이러한 성폭력은 특히 위험한데, 의사 표현과 강요에의 저항 능력이 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노인에 대한 성폭력의 결과는 파괴적이며 심각한 신체 부상, 중대한 정서적 외상, 장기적인 건강 문제, 독립성 상실, 시설 입소 및 때 이른 사망 등을 포함한다.<sup>60</sup>

54. 독립 전문가와 공유된 정보에 따르면, 여성 노인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직면하며, 이들에 대한 정서, 재정, 물질, 신체,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상당수의 경우 성인 자녀가 가해자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다섯 유럽 국가에서 행해진 노년 여성에 대한 가정 학대와 폭력을 다룬 몇 안 되는 관련 연구 중 하나에 따르면, 노년 여성의 28.1퍼센트가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이것은 주로 감정적인 학대였고 다음이 경제적 학대였다.<sup>61</sup>

55. 폭력, 학대, 방치의 사례는 거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시설 환경에서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젠더가 관련 위험, 그 형태 및 결과를 형성하는 과정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돌봄 시설에서의 학대 및 방치가 발견되었다.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거주자, 특히 치매를 앓는 거주자에 대한 과잉 투약, 직원 훈련과

<sup>60</sup> Submission by the Castan Centre for Human Rights Law; see also Ruthy Lowenstein Lazar, “Me too? The invisible older victims of sexual violence”, *Michigan Journal of Gender and Law*, vol. 26, No. 2 (2020).

<sup>61</sup> See [https://ec.europa.eu/justice/grants/results/daphne-toolkit/content/prevalence-study-abuse-and-violence-against-older-women-avow-1\\_en](https://ec.europa.eu/justice/grants/results/daphne-toolkit/content/prevalence-study-abuse-and-violence-against-older-women-avow-1_en).

그 수가 적당하지 않은 돌봄 시설에서 거주자를 "관리(manage)"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 없이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이었다.<sup>62</sup>

56. 젠더 관련 살인, 즉, ‘여성 살인(femicides)’은 여성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다.<sup>63</sup> 여성 노인에 대한 ‘여성 살인’은 그 연구와 데이터가 제한적인데, 이는 젊은 여성이 관련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특징, 상황, 형사 사법적 대응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64</sup> 여성 노인 살인의 경우에도 친밀한 파트너가 가장 흔한 가해자이지만, 낯선 사람과 성인 자녀 (주로 남자 성인 자녀)에 의한 살인이 더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

57. 여성 노인, 특히 자녀나 손자녀가 없는 미망인들은 마법과 관련된 비난의 결과로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추방되거나 폭력, 고문, 살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 이러한 사례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의 일부 국가에서 관찰된다.<sup>65</sup> 독립 전문가의 모잠비크와 나미비아 방문에서 발견된 것처럼, 설명되지 않은 사건과 사망(특히 남자 배우자의 사망) 뒤 비난이 따를 수 있는데, 이러한 비난은 해당 여성의 재산과 유산을 탈취하려는 욕구 때문이거나, 진단되지 않은 치매 및 기타 인지 상태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다(see [A/HRC/42/43/Add.2](#) and [A/HRC/36/48/Add.2](#)).

58. 돌봄, 약, 이동성, 주택, 음식, 재정, 기타 지원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sup>62</sup> Submission by Human Rights Watch.

<sup>63</sup>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emicide watches and systematic data collection (see [A/71/398](#)).

<sup>64</sup> Myrna Dawson, “Patterns in femicide of older women in Ontario, Canada, 1974 –2012”, in *Femicide*, vol. 8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Vienna Liaison Office, 2017).

<sup>65</sup> Beliefs and practices relating to witchcraft are diverse and not easily defined. For a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 see [A/HRC/37/57/Add.2](#); [A/HRC/41/33](#), para. 28; and [A/HRC/23/49/Add.2](#).

것은 여성 노인이 자기 의견을 표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자주 방해한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당혹감, 자책감, 수치심 또한 느낄 수 있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권리 침해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적 기대와 믿음, 나이 든 파트너를 돌보거나 오랜 관계를 유지하려는 압박 때문에 학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59. 기존의 보호 메커니즘이 여성 노인의 필요에 대부분 맞지 않았으므로,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지원 및 보호의 부족은 여성 노인의 신고를 더욱 단념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돌봄 제공자 및 경찰은 노년 여성이 관련된 사건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반면, 씬터는 목욕, 복장, 이동 및 기타 돌봄 필요를 가진 노년 여성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일부 고무적인 사례가 보고되기는 했는데, 지원,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한 추천 및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에서와 같이 예비 조사 수행 능력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의 설립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sup>66</sup> 다른 지역에서는 예방과 대응을 개선하고, 높은 학대 위험에 놓인 여성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중 기관 모델(multi-agency model)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가 있다.<sup>67</sup>

60. 여성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방치가 보고되어도, 연령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생각 때문에 불신과 회의에 부딪힐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여성 노인에 대한 '여성 살인'이 가벼운 형으로 판결되고 있음과 많은 경우, 언론, 경찰, 변호인에 의해 "자비로운 살인(안락사, mercy killings)"으로

<sup>66</sup> Submissions by the Public Prosecution Service of the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Chile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exico City.

<sup>67</sup> See, for example, [www.work-with-perpetrators.eu/projects/marvow](http://www.work-with-perpetrators.eu/projects/marvow).



분류됨을 지적한다. 이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반영하지만, 혹시나 모를 오랜 학대 등 여성이 실제 산 현실을 가리울 수 있다.<sup>68</sup> 게다가, 기억력 문제와 기타 인지 문제를 가진 여성 노인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소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와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실현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적은 수가 유죄 판결받게 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여성 노인이 폭력과 학대의 상황에서 정의를 얻는 데 중요한 도전을 만들어낸다.

#### G. 갈등 및 긴급 상황(Conflict and emergency contexts)

61. 이전 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은 비상 상황에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ee [A/HRC/42/43](#)). 분쟁, 자연재해, 팬데믹 및 기타 비상사태는 자주 여성과 소녀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성(sexual) 및 젠더에 따른 폭력의 증가, 불안정성, 의료 서비스 및 추가로 필요한 돌봄의 이용 불가능 또는 부적당함, 가정 및 생계 책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초래된 비상 상황에서, 여성 노인은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학대 및 방임에 취약하다(see [A/HRC/47/46](#), para. 36). 하지만, 여성 노인에 대한 특정한 위험과 영향은 일반적으로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장기 요양에 관한 보고서와 노인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세분된 데이터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

62. 무력 분쟁에서 여성 노인은 근거 없는 구금,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

<sup>68</sup> See the 2009–2018 femicide censu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성폭력, 근거 없는 살인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희생자가 되어왔다.<sup>69</sup>

여성 노인, 특히 노년 여성 장애인은 제한된 이동 능력과 멀고 안전하지 못한 여정의 어려움 때문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 여성을 포함한 노인들은 그들의 집과 마을이 국군과 비국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희생되었다.

63. 집과 토지에의 깊은 유대 때문에 노인들은 국가의 통제 밖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거주 지역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도 더 높다. 이것은 학대, 폭력, 박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의 경우, 여성 노인을 포함한 여성들이 집 밖에서 생계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식량에의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했다.<sup>70</sup>

64. 강제 이주 상황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위급상황은 여성 노인에게 특히 부담을 주는데, 많은 여성 노인이 수입, 식량, 의료에 대한 접근 없이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혼자 살고 있다.<sup>71</sup>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노인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며, 이것은 그들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성 또한 높인다. 읽고 쓰는 능력의 부족과 젠더에서 오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성 노인이 정보, 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서류를 신청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붕괴뿐만 아니라 의료와 연금 등 비상 상황에서의 지원 시스템의 저하와 자주 결합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Georgia)의 여성 노인은 실향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빈곤과

<sup>69</sup> Submission by Human Rights Watch.

<sup>70</sup> Amnesty International, *My Heart is in Pain: Older People's Experience of Conflict, Displacement, and Detention in Northeast Nigeria* (London, 2020).

<sup>71</sup> HelpAge International, "If not now, when? Keeping promises to older people affected by humanitarian crises" (London, 2020).

소외의 위험에 처해 있다(see [A/HRC/39/50/Add.1](#), para. 46).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Ⅲ. 여성 노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 중 'E. 장기 요양과 지원,' 'F. 폭력, 학대 및 방치,' 'G. 갈등 및 긴급 상황'을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76%2F157&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 [elee@asemgac.org](mailto:elee@asemgac.org)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